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6월 3일, 장문혁 의원발의
- 회부일자 : 2019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6월 1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문혁 의원)

### 가. 제안이유

- 평창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자 (안 제4조)
  -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 해당건물 준공 후 20년 경과한 단독주택
- 지원범위 및 규모 (안 제5조)
  -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 200만원 이내
-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한 (안 제6조 ~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주택개선 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원제한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1부.

##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이 경우 건물 준공일은 주 건축물의 건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가, 강원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사람.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차인의 경우 건물소유자의 동의서(신청사업의 내용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제8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대상가구 선정심사 기준 (제6조 관련)

영역	구분	평가기준	배점기준	비고
		합 계	100	
거주기간 (30)	평창군 거주기간 (30)	10년 이상	30	
		7년 이상 10년 미만	27	
		5년 이상 7년 미만	24	
		5년 미만	20	
건물노후도 (20)	건축년도 (20)	30년 이상	20	
		25년 이상 30년 미만	18	
		23년 이상 25년 미만	15	
		23년 미만	10	
주거형태 (10)	주거형태 (10)	자가	10	
		10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8	
		5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6	
		3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4	
가구원수 (10)	가구원수 (10)	4명 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경관개선 시급성 (30)	시급성 (30)	상	30	
		중	25	
		하	20	





